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4월 7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(조미선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오산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대상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
(안 제5조 및 제6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3년 4월 13일까지
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- 전자메일 : blue6017@korea.kr

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중위생업소”란 「공중위생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의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.
2. “우수업소”란 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우수업소를 말한다.
3. “단체”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오산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및 단체로 한다.

1. 우수업소
2.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위생 영업자단체

제6조(지원사업)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.

1. 공중위생영업 발전을 위한 행사 및 육성 지원사업
2.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·컨설팅
3.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평가
4. 사회봉사 활동 지원
5.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지원의 제한) 지원대상 공중위생업소가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거나,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8조(홍보)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】

관계법령 발췌서

【공중위생관리법】

제2조(정의)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5. 3. 31., 2016. 2. 3., 2019. 12. 3.>

1. “공중위생영업”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·목욕장업·이용업·미용업·세탁업·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.
2. ~ 8. <생략>

제16조(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)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.